

서울특별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3590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6년 3월 3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위탁기간이 2026. 10. 31.자로 만료되므로,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양질의 종합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
- 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- 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제5항
 - 2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(관리·운영의 위탁) 제1항
 - 3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및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

다. 위탁 사무 내용

- 1) 사례관리기능(사례발굴, 사례개입, 서비스연계)
- 2) 서비스제공기능(가족기능강화, 지역사회보호, 교육문화, 자원 개발 및 관리)
- 3) 지역조직화기능(복지네트워크 구축, 주민조직화, 자원개발 및 관리)
- 4)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

라. 위탁 시설 개요

- 1) 소재지 :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 5 외 2(건물 3동)
- 2) 시설규모 : 대지 533.15m², 건물 1,823.85m²(3개동, 지상3층)
- 3) 주요시설 : 프로그램실, 상담실, 강당, 자원봉사자실 등
- 4) 위치도



마. 민간위탁 기간 : 5년(2026. 11. 1. ~ 2031. 10. 31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1) 소요예산 : 1,506 백만원('26년 기준)
- 2) 산출근거 : 인건비 1,165 백만원, 운영비 188 백만원,
사업비 151 백만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26년 제2차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(사회복지시설의 설치) 제5항
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2)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제1항
 -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3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제1항 제3호
 -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 -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)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1호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1)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(공개모집) 추진계획
(돌봄복지과-3824, 2026. 2. 11.)

붙임: 1. 성과보고서 1부.

2.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1부.

※ 작성자 : 복지실 돌봄복지과 정소율 (☎ 2133 - 7388)